

# 예산총칙

2009년도 본예산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210,960,000	6,328,800
일 반 회 계	167,011,182	5,010,335
특 별 회 계	43,948,818	1,318,46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7,330,713	819,92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599,346	437,98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731,367	381,941
기 타 특 별 회 계	16,618,105	498,543
주택사업 특별회계	244,000	7,32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64,831	25,945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151,980	4,55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74,810	11,244
공업단지 특별회계	520,000	15,600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068,886	362,06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710,000	21,300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1,506,468	45,194
기반시설특별회계	177,130	5,314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90,272 천원으로 한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